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 안 번 호 제 2950호

제출년월일 2021. 11. . 제 출 자 김계순의원

1. 제안이유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김포시의회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공무원증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지방자치법」, 「공무원증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생 략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해당없음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의회사무국

김포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증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김포시의 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 집행에 있어서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보여야 한다.
 - ②공무원은 당해 행정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단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 ③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 질서유지 상 필요할 때 2. 보안유지 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의 확인 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소속 공무원은 퇴직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 ②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2.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